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군방첩사령부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54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4
2.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5
3. 주요 조문별 검토	8
1) 법률의 목적과 ‘국군방첩사령부’ 설치를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8
2) 국군방첩사령부 운영원칙(안 제3조)	9
3) 직무수행 범위에 관한 조항(안 제4조)	12
4) 직무 수행 시 거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16
5) 조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18

6) 사령관 등의 임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20
7) 손실보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21
8) 정치 관여 금지 및 정치 관여시 처벌 조항 신설(안 제14조, 제17조)	24
9) 직권 남용,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및 각각에 대한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28
10)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안 제20조)	3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0.
3. 회부연월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군은 정보·수사 기관으로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다른 정보·수사기관의 경우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 공권력 집행기관의 설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간 군의 정보 수집·처리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위배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의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방첩, 군사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군인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수집,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국군방첩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도록 하며,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

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감금,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등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정치 관여죄, 직권 남용죄, 불법감청의 죄를 범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및 각급 부대의 지휘관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1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목적 및 체계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령(「국군방첩사령부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다른 정보·수사기관과 달리 국가 공권력 집행기관의 설치 근거로 불충분하고, 군의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위배와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는 만큼,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 원칙, 직무, 권한을 법률로써 명확히 하여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총 21개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 제1조(목적)
- 제2조(설치)
- 제3조(운영 원칙)
- 제4조(직무)
- 제5조(직무 수행 시 거부)
- 제6조(자료의 제출 요청)
- 제7조(조직)
- 제8조(사령관 등의 임명)
- 제9조(사령관 등의 임무)
- 제10조(정원)
- 제11조(무기 휴대 및 사용)
- 제12조(손실보상)
- 제13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 제14조(정치 관여 금지)

제15조(직권 남용의 금지)
 제16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제17조(정치 관여죄)
 제18조(직권남용죄)
 제19조(불법감청·위치추적 등의 죄)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21조(인권지도 및 감독)
 <부 칙>
 제1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제정안에 대한 총괄 검토

가. 제정안에 대한 논의 배경 및 총괄 검토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국군조직법」에 의해 위임된 대통령령에 그 설치 근거가 있음¹⁾.

초기 국군의 보안·방첩 업무는 육·해·공군이 개별적으로 수행했으나,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가 창설되면서 3군의 방첩부대가 통합됨. 이후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격하되었다가, 2022년 11월 1일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개편됨. 이와 같은 변천 과정은 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1)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화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국군방첩사령부(전신 포함)는 중장이 사령관으로 보임되는 기능사령부급 부대이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온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성 위배나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제정안은 현행 「국군방첩사령부령」을 법률로서 상향 입법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이외의 모든 사령부급 부대가 대통령령에 그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점, 군 방첩·군사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는 법 제정에 따라 직무 활동이 위축되거나 기능 수행이 제한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나. 관계부처 의견

국방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대상과 범위가 축소·제한되고, 전시 등 안보상황에 맞추어 군 통수권자의 유연한 국군조직 운영이 제한된다는 입장임.

국가정보원은 제정안에 대해 ‘방첩’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는 방첩 업무의 범위가 실제보다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1) 법률의 목적과 ‘국군방첩사령부’ 설치를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제정안은 군 방첩, 군사 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설치와 소속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군방첩사령부령」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방첩, 군사 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군방첩사령부 (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제2조(설치) 제1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사령부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령」 (이하 “시행령”이라 함)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조직·운영 등만 규율한 것과 다르게, 안 제1조에서 군 방첩, 군사 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

- 국방부는 군사보안 및 정보 업무 등은 국방정보본부, 정보사령부 등의 부대도 수행하고 있는바, 안 제2조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 한하여만 안 제1조의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할 경우 오로지 국군방첩사령부만 군사보안 및 정보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으며,
- 국군방첩사령부를 법률로 설치할 경우, 전시 등 안보상황에 맞추어 군 통수권자의 유연한 국군조직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규정(안 제3조)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한 정보수집 의무 및 권한의 오·남용등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군방첩사령부령」	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3.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는 모	제3조(운영 원칙) ① 사령부는 운영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과 그 밖의 직원(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과 군인·군무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2. 군인과 군무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남용하는 모든 행위 3.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든 행위 4.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4. 군인·군무원,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는 행위 5. 이 법에서 정한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는 행위 6.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	--

□ 다만, 제정안은 제3조제1항에서 관련 법령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서 인격체가 아닌 사령부를 지칭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절하지 않아 보임. 따라서 “사령부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과 그 밖의 직원”을 주어로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임.

관련해서 현행 「국군방첩사령부령」²⁾에서는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방부는 안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군인·군무원,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안 제4조제1항제2호가목³⁾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원

2) 「국군방첩사령부령」 제3조(기본원칙) ①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3) 제정안 제4조제1항제2호 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조사 등 개인정보 수집이 필연적인 업무 역시도 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안 제3조제2항제5호의 경우 명령의 정의와 대상이 불분명하여, 직무
수행이 소극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호를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직무 수행 범위에 관한 조항(안 제4조)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수행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국군방첩사령부령」	제 정 안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u>군 관련 방첩업무</u>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u>군형법</u>」에 따른 <u>군 관련 방첩업무</u> 나.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군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라.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개선 지원

□ 「방첩업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이고, 「군형법」은 군인 및 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 국방부는 제정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군형법」은 군인 등이

행한 죄에 대한 처벌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로써 방첩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현행 「국군방첩사령부령」과 같이 방첩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방첩업무 규정」상의 ‘군 방첩 업무’의 정의를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제정안 제4조제1항제3호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 수행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군방첩사령부령」	제 정 안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1)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방위사업청	제4조(직무)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규정된 <u>죄에 관한 정보</u> 라.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1)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른 국방부·방위사업

· 병무청

-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합동참모본부·합동부대·기관
-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라.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에 관한 군 관련 불법·비리 정보

- 1) 군인 및 군무원
- 2)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예정자
- 3)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
- 4) 그 밖에 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청·병무청

- 2)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군·합동참모본부·합동부대·기관
-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
-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조정·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된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에서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군 관련 정보(다목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당시의 사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	--

□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령」과 비교했을 때, 기존의 가목(국내 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목(대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외에 다목(「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을 추가하였으며,

「국군방첩사령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업무 중 라목의 군 관련 불법 비리 정보 관련 업무를 삭제함.

□ 국방부는 제정안의 제4조제1항제3호다목과 관련하여, 「군형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여 규정

할 경우, 군 및 방위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방첩
취약점 확인과 예방 목적의 정보수집 업무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임.

또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4조제1항제3호라목
(군 관련 불법·비리 정보)이 제정안에서는 삭제되었는바, 군 관련
불법·비리 정보 수집은 국군방첩사령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써
정보수집·처리 업무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기에 「국
군방첩사령부령」의 규정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직무 수행 시 거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

제정안은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 등에게 안 제3조제2항 각 호(권한 오·남용,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임.

「국군방첩사령부령」	제 정 안
제5조(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직무 수행 시 거부)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음⁴⁾. 다만, 명령을 받은 하급자는 그 지시 또는 요구가 명백히 위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임.

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 국방부는 군 조직은 민간 조직과 달리 명령·지휘체계가 뚜렷하고, 항명죄가 존재하여 하급자가 선불리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임. 따라서 지시의 위법성에 대한 개별적·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이를 객관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문대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5) 조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령」 상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행위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군방첩사령부령」	제 정 안
제6조(조직)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국군방첩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	제7조(조직)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의 국군방첩부대 2.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국군방첩부대 3.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국군방첩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국군방첩부대를 둘 수 없다. 4. 정보보호부대 5. 국군방첩학교 6. 방위사업청의 국군방첩부대 7.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에 따른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

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과 사령관은 제4조의 따른 직무 범위를 일탈하여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국방부에 따르면, 제정안 제7조는 조직 설치에 관한 규정인 반면, 「국군방첩사령부령」과 비교할 때 새로 추가된 동조제4항은 국방부장관과 국군방첩사령관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 「국가정보원법」의 입법례⁵⁾와 비교할 때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임.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국가정보원법」 제6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령관 등의 임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군방첩사령부령」	제 정 안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u>④ 사령관·참모장 및 감찰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u>

□ 안 제8조제4항은 「국가정보원법」의 겸직 금지 규정⁶⁾을 차용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의 사령관·참모장 및 감찰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직(職)의 의미가 다른 직업을 의미한다면, 이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⁷⁾에 따라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되고

6) 「국가정보원법」 제10조(겸직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있으므로, 본 제정안에서의 명시는 입법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음.

다만, 직(職)의 의미가 다른 직위를 의미한다면, 전시 방첩업무 등에 관한 합동수사기구의 운영 등을 위해 해당 사령관 등이 여러 보직을 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겸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의견 등을 감안했을 때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손실보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손실보상) ① 국가는 사령부 소속 군인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사령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2조는 현행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손실보상 규정을 동 제정안에도 도입하려는 것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7조(손실보상)

- ① 국가는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손실보상)

-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방부는 군사경찰 및 경찰에 대해서만 손실보상 규정이 입법되어 있는 취지는 군사경찰·경찰이 경비, 질서유지 등 행정경찰⁸⁾의 직무를 국민 상대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보며, 방첩 및 정보 업무의 특성상 동 규정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 및 입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국군방첩사령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군인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손실보상 규정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735호)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바, 동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경찰을 의미하는 강학상 용어임(사법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 및 법 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임)

8) 정치 관여 금지 및 정치 관여시 처벌 조항 신설(안 제14조, 제17조)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이 정당·정치단체 가입 및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규정을 신설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4조(정치 관여 금지) ① 군인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나 다른 군인·군무원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사령부 소속 군인등은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령부 소속 군인등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사령관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 관여죄)

①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 제14조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및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며, 안 제17조는 제14조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제정안 제안이유의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문제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 국방부는 안 제14조제3항에 대해 정치 관여에 관한 지시의 위법성 여부를 개인이 주관적·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적법한 직무의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그 직무수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국가정보원법」 9)과 달리 이의제기 절차가 부재한 점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임.

제5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모든 사항을 사령관이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기에 의도치 않게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할 경우 정보기관의 직무내용이 대외에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
- 9)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참석·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유도·권유·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③ 직원은 원장, 차장·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직원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장임.

안 제 17조에 대해서는 「군형법」 10)에서 정치 관여에 대한 처벌을 이미 규율하고 있고, 직무 수행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10)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9) 직권 남용,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안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정안은 국군방첩사령부의 군인등에 대해 직권남용,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감청 및 위치추적 등의 금지 및 각각에 대한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5조(직권 남용의 금지) 사령부 소속 군인등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사령부 소속 군인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권남용죄) ① 제1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9조(불법감청·위치추적 등의 죄) ① 제16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6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 제15조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 절차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는 법에 의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감청 및 위치추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임.

안 제18조와 제19조는 각각 제15조와 제16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제정안들은 제안이유의 군의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민간인 사찰 등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 국방부는 안 제15조와 제16조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정당한 임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제정안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직권남용 내지 불법감청 등의 행위는 「형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안 제19조제1항은 「통신비밀보호법」 11)의 규정과 동일한 범죄 구성 요건을 가지면서도, 더 강화된 처벌 규정(자격정지: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5년 이하, 제정안은 7년 이하)이 적용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안 제20조)

제정안은 개별법상의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7조와 제19조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제정안은 안 제17조(정치 관여죄) 및 제19조제2항(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금지를 위반한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해 「군사법원법」¹²⁾,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12) 「군사법원법」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제정안의 취지는 해당 사안들의 특성상 법 위반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는 경향이 있어, 공소시효 도과 시 처벌할 수 없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 ☐ 국방부는 제정안에 대해 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일괄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